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종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66

발의연월일: 2020. 6. 8.

발 의 자:도종환·김영주·박 정

김철민 • 이정문 • 안민석

기동민 · 조승래 · 임호선

김원이 • 이원택 • 김병기

이상헌 · 정정순 · 민홍철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 이행을 장려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등의 유네스코 회원국의 무형문화유산 보호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법률에 기관의 약칭이 "아·태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로 유네스코 카테고리 2기구의 의미를 담지 못하고 있어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로 변경함.

또한 기관의 사업내용이 명시되지 않고 기관설립 목적인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유네스코 회원국의 무형문화유산보호 활동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만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 세부 사업내용을 알 수 있도록 근

거 규정을 신설함.

아울러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고보조금 이외 다양한 재원 확보를 통해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특히 대한민국과 유네스코가 체결한 협정문에 의하여 아시아 태평양 지역 회원국의 자생적이고 지속적인 무형문화유산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IT 등 관련 기업의 현물 지원과 기부금과 같은 재원이 매우 절실한 상황임.

그런데, 현행법에는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의 기부금 접수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은 별도의 근거 법률이 없이 기부금 접수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어 기부금 접수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현행법에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 네트워킹센터의 제반 사업을 위하여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법률 제 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중 "아·태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를 각각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⑦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무형문화유산 정보공유 체계구축 및 활용을 위한 활동 지원
- 2. 무형문화유산 보호 관련 교육, 출판, 학술조사·연구, 전시 및 콘텐츠 개발과 활용
- 3. 무형문화유산 관련 공동체, 단체, 개인 등과 비정부기구, 시민사회단체, 관련 기관(교육기관, 학술기관, 박물관 및 문화센터, 유네스코 관련 기관 등) 등의 네트워크 구축, 이를 위한 공공행사 조직
- 4. 공유된 무형문화유산 정보의 국내적 활용을 위한 사업
- 5.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6.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⑧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는 제7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아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 부터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있다.

⑨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는 제8항에 따라 모집·접수한 기부 금은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7조(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제47조(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
킹센터의 설치) ① 유네스코의	킹센터의 설치) ①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 이행을 장려하고, 아시	
아ㆍ태평양 지역 등의 무형문	
화유산 보호활동 등을 지원하	
기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유	
네스코 아시아·태평양 무형문	
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	
(이하 " <u>아</u> ·태무형문화유산 국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
제정보네트워킹센터"라 한다)	센터
를 둔다.	
② 아・태무형문화유산 국제정	②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보네트워킹센터는 법인으로 한	
다.	,
③ 아·태무형문화유산 국제정	③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보네트워킹센터는 정관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 <u>아·태무형문화유산 국제정</u>	④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보네트워킹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	
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 을 준용한다.
- ⑤ <u>아·태무형문화유산 국제정</u> 보네트워킹센터의 운영에 필요 한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태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 네트워킹센터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 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 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⑤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6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⑦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무형문화유산 정보공유 체계
구축 및 활용을 위한 활동 지
원
2. 무형문화유산 보호 관련 교
육, 출판, 학술조사·연구, 전
시 및 콘텐츠 개발과 활용
3. 무형문화유산 관련 공동체,
단체, 개인 등과 비정부기구,
시민사회단체, 관련 기관(교
육기관, 학술기관, 박물관 및
문화센터, 유네스코 관련 기
관 등) 등의 네트워크 구축,
이를 위한 공공행사 조직
4. 공유된 무형문화유산 정보의

<신 설>

<신 설>

국내적 활용을 위한 사업

- 5.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 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6.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 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⑧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는 제7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법률」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아 법인・단체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있다.
- ⑨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는 제8항에 따라 모집·접수한기부금은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